

의안번호	2213033
의 퇴 인	정진욱 의원
회 답 일	2025. 12. 17.
추계번호	25A516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6호(정의)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28조제2항제2호(자금지원 범위 확대)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3	안 제28조제3항(자금지원 대상 확대)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6호(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8조제2항제2호(자금지원 범위 확대)	
3	안 제28조제3항(자금지원 대상 확대)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안 제2조제6호), ②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실시하는 자금지원 항목에 ‘설비의 감축’을 포함하며(안 제28조제2항제2호), ③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주무부처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승인·인정한 경우에는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을 지원하거나 설비투자 등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안 제28조제3항)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여 이 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법 제4조제1항1)에 따라 ‘공급안정’, ‘미래 사업재편 추진’,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되 부실기업 등이 아닌 기업임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51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되었음
 - * [참고자료 1]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수(2021~2025년)
 -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 승인기업)은 현행법 제27조²⁾ 또는 제28조제1항·제2항³⁾에 따라 세제지원 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에는 155개 기업에 1,038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

-
- 1)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2)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 2025년에는 133개 기업에 36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음

* [참고자료 2]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내용 및 현황(2024, 2025년)

□ (안 제2조제6호)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정의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할 경우 사업재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수 및 지원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5년 11월 현재 지정지역이 없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전남여수(석유화학), 충남서산(석유화학), 경북포항(철강)의 세 곳임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각 주요산업의 사업체 수는 전남여수(석유화학) 100개, 충남서산(석유화학) 44개, 포항(철강) 184개 기업임

* [참고자료 3]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 개정안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산업까지 확대되면 여수, 서산, 포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로 확대되므로 세제지원, 자금지원의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28조제2항제2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 실시하는 자금지원에 ‘설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의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 현행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필요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을 실시하거나, 공정개선 및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 비용,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 관련 비용 등임

- (안 제28조제3항) 사업재편이 승인되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주무부처의 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기업에게 자금의 보조·융자·출연이나 설비투자 등 자금지원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향후 추가로 자금지원이 실시될 기업의 수, 지원 금액 등의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능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1]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수(2021~2025년)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재편 승인기업	108	106	93	57	51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2]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내용 및 현황(2024, 2025년)

1.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및 현황

구분	혜택 세제	근거 법률조항	내용	수혜기업 수(개)	
				2024년	2025년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이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대금 중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한 비율만큼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後3년 분할납부)	-	-
기업 간 주식교환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먼저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로 교환: 취득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	-

구분	혜택 세제	근거 법률조항	내용	수혜기업 수(개)	
				2024년	2025년
합병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용 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 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 납부	—	—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	법인세,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 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 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 세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 인세 감면	—	—
주주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이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 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3년 분할 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
금융채무 면제시 과세이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이후 3년 분할 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
적격합병 기준 완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 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	—
등록면허세 감면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제8항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자본금 증가분의 0.4%)를 50% 감면	—	—
관세납기 연장	관세	—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 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 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 부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 이 있고, ② 최근 2년 체납사 실이 없을 경우 해당	—	—

구분	혜택 세제	근거 법률조항	내용	수혜기업 수(개)	
				2024년	2025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세	법인세법 제13조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 인에 대해 기업 규모와 무관 하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 대(해당 사업년도 소득의 60%→100%)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 업년도분부터 적용	1	—

자료: 산업통상부

2.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및 현황

[참고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구분	근거 조항	상세 내용	수혜기업			
			2024년		2025년	
			수(개)	지원금액 (백만원)	수(개)	지원금액 (백만원)
자금지원	기활법 제28조제1항	사업전환 용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6	38,084	46	31,302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5	5,100	4	3,400
		사업재편기업보증 (기술보증기금)	4	779	—	—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한국산업은행)	2	49,000	—	—
		회사인수 자금 대출 (기업은행)	1	740	—	—
		기업구조혁신펀드	1	1,000	—	—
연구개발 활동 지원	기활법 제29조제1항	사업재편 전용R&D	11	4,928	—	—
		정부R&D 참여 지원 (가점-산업부)	4	3,120	1	840
		정부R&D 참여 지원 (가점-중기부)	—	—	—	—

구분	근거 조항	상세 내용	수혜기업			
			2024년		2025년	
			수(개)	지원금액 (백만원)	수(개)	지원금액 (백만원)
중소·중견기업 의 사업혁신 지원	기활법 제30조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41	400	—	—
		사업재편 이행지원 및 애로해소 컨설팅	—	—	82(예정)	900(예정)
		스마트공장 지원	5	549	—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기활법 제31조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1	10	—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1	1	—	—
		산업·일자리 전환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2	157	—	—
지역균형발전 특례	기활법 제31조의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	—	—	—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3]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역(주요산업)	지정 유효기간	지원내용	사업체 수(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	‘25.5.1~’27.4.30	지정지역 지원사항 :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	100
	충남 서산시 (석유화학)	‘25.8.28~’27.8.27		44
	경북 포항시 (철강)	‘25.8.28~’27.8.27		18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현재 지정지역 없음		—	—

주: 여수와 서산의 석유화학산업 사업체 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인 정유 산업과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체 수를 명시하였고, 포항의 철강산업은 1차 철강 제조업의 사업체 수를 명시함

자료: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전국사업체조사」, 2025)